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0. ~ 8.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무부”를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0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으로 하며, 행

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항 관련)

1. 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7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15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주사	1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 ---------- ---------- ---------- ---------- ---------- ---------- ----------.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0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9	71	+2
일반직 계	61	63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	13	+2
·	·	·	
·	·	·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9	71	+2
일반직 계	61	63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	13	+2
·	·	·	
·	·	·	